

청심국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표

일시: 2015년 11월 6일 (금)

장소: 본교1층 VIP

안 건 명	자문사항	처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
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건	1. 제목 :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건 2. 내용 :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관련 운영규정 제3조(구성) 2항에 의거해 교원 3인, 학부모 4인 및 교감1인은 당연직(위원장)으로 구성 함. -2015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- 청심국제중학교 <table><tr><th>위 원</th><th>성 명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위 원 장</td><td>김정석</td><td>교 감(교장위촉)</td></tr><tr><td>평가관리(교원) 위원</td><td>이명진</td><td>연구평가부장</td></tr><tr><td>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</td><td>정은영</td><td>학부모</td></tr><tr><td>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</td><td>최미선</td><td>학부모</td></tr><tr><td>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</td><td>박정원</td><td>학부모</td></tr><tr><td>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</td><td>고영주</td><td>학부모</td></tr><tr><td>평가관리 실무자(간사)</td><td>조정은</td><td>연구평가부원</td></tr></table>	위 원	성 명	비 고	위 원 장	김정석	교 감(교장위촉)	평가관리(교원) 위원	이명진	연구평가부장	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	정은영	학부모	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	최미선	학부모	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	박정원	학부모	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	고영주	학부모	평가관리 실무자(간사)	조정은	연구평가부원	원안 통과
위 원	성 명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 장	김정석	교 감(교장위촉)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관리(교원) 위원	이명진	연구평가부장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	정은영	학부모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	최미선	학부모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	박정원	학부모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관리(학부모) 위원	고영주	학부모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관리 실무자(간사)	조정은	연구평가부원																								
청심국제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건	1. 제목 : 청심국제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건 2. 목적 : 초·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·시행되고 있는 「청심국제고등학교규칙」에 대하여 초·중등교육법 제10조,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. 내용 <table>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<tr><td>청심국제고등학교규칙</td><td>청심국제고등학교 규칙</td></tr><tr><td>제3조(위치) 본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-211번지에 둔다.</td><td>제3조(위치) 본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-213번지에 둔다.</td></tr><tr><td>제5조(학급수 등)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고시·통보하는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.</td><td>제5조(학급수 등)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.</td></tr><tr><td>제8조(수업 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.(<생략>).....</td><td>제8조(수업 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>제12조(수업운영방법)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<u>교류학습</u>, <u>현장(체험)학습</u>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청심국제중고등학교학생생활규정'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td><td>제12조(수업운영방법)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<u>학교간 교류학습(위탁교육)</u>을 1개월 이내, <u>교외체험학습</u>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td></tr></table>	현 행	개 정 안	청심국제고등학교규칙	청심국제고등학교 규칙	제3조(위치) 본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-211번지에 둔다.	제3조(위치) 본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-213번지에 둔다.	제5조(학급수 등)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고시·통보하는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.	제5조(학급수 등)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.	제8조(수업 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.(<생략>).....	제8조(수업 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(현행과 같음)	제12조(수업운영방법)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<u>교류학습</u> , <u>현장(체험)학습</u> 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청심국제중고등학교학생생활규정'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	제12조(수업운영방법)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<u>학교간 교류학습(위탁교육)</u> 을 1개월 이내, <u>교외체험학습</u> 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	원안 통과												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
청심국제고등학교규칙	청심국제고등학교 규칙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조(위치) 본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-211번지에 둔다.	제3조(위치) 본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-213번지에 둔다.																									
제5조(학급수 등)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고시·통보하는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.	제5조(학급수 등)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
제8조(수업 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.(<생략>).....	제8조(수업 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2조(수업운영방법)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<u>교류학습</u> , <u>현장(체험)학습</u> 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청심국제중고등학교학생생활규정'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	제12조(수업운영방법)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<u>학교간 교류학습(위탁교육)</u> 을 1개월 이내, <u>교외체험학습</u> 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

	제19조(입학 시기)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. 제20조(입학)(<생략>)..... 제23조(전·편입학) ① 본교에 전·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<u>결원이 있는 경우에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전·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/u>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, 외국인 학생,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는 (타시도 및 타시군 전입생을 포함하여) 정원의 3%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·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제28조(자퇴) 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<u>15일 내외의</u> 숙려 기간을 둔다. 제29조(학교 생활규정) 제29조(학교 생활규정) ① <u>학교생활규정을 학교 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.</u> 제29조(학교 생활규정)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지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·운영 한다. 제29조(학교 생활규정) 학교 장은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이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·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<u>학생의</u> 의견을 들어야 한다.	제19조(입학 시기) <u>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.</u> 제20조(입학방법) (현행과 같음) 제23조(전·편입학) ① 본교에 전·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'<u>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·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지침</u>'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다. ② <u>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및 제89조 제2에</u>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·편입학은 '<u>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·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</u>'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. 제28조(자퇴) 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<u>14일(공휴일 포함)의</u> 숙려 기간을 둔다. 제29조(학교 생활인권규정) <삭제> 제29조(학교 생활인권규정)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지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·운영 한다. 제29조(학교 생활인권규정) 학교장은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 방법, <u>두발·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</u>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·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<u>학생, 학부모, 교원의</u> 의견을 들어야 한다.	
--	--	---	--

